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477-01

농업법인 사업범위 개편방안 연구

2023.12.



농림축산식품부



경남연구원

차례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3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제2장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분석

- 1. 농업·농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현황 분석 8
- 2.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현황 분석 12

제3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 1. 독일 15
- 2. 일본 29
- 3. 시사점 37

제4장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 설정 및 관리방안

- 1.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 설정 39
- 2. 농지소유 농업법인 관리방안 40

제5장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개편방안

- 1. 농업법인 사업범위 체계 재설계 48
- 2. 사업범위 확대 기준 검토 50
- 3. 사업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사업 53
- 4.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증장기 검토과제 54

참고문헌 55

부록 1 57

부록 2 (일본) 농지소유적격법인 보고서 양식 86

표 차례

제1장 서론

<표 1-1> 김수석 외(2006) 연구의 농업법인제도 개편안	6
--	---

제2장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분석

<표 2-1> 농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9
--	---

<표 2-2>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현황	12
-----------------------------------	----

제3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표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유형별 구성	18
--------------------------------	----

<표 3-2>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농업경영체 구성 비교 - 2020년	19
---	----

<표 3-3> 독일 농업관련 4대 보험 가입의 최소영농규모 기준	21
---	----

<표 3-4> 독일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 기준	27
-----------------------------------	----

<표 3-5>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규과세 정산방식	28
-----------------------------------	----

<표 3-6> 주식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차이	29
--------------------------------	----

<표 3-7> 일본 농업법인의 유형별 구성	30
-------------------------------	----

부록 1

<부표 1> 농업·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관련 법규	57
---------------------------------------	----

<부표 2> 농업법인 관련 중앙부처 소관 법규	65
---------------------------------	----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그림 1-1> 마상진 외(2020) 연구의 농업법인제도 개편안	6
---	---

제3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그림 2-1> 독일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20
-------------------------------------	----

<그림 2-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23
----------------------------------	----

<그림 2-3>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체계	24
---------------------------------------	----

제4장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 설정 및 관리방안

<그림 3-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처분명령 추진체계	45
---------------------------------------	----

1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농업법인 제도는 1989년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발대책)’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서 전업농가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공동영농조직과 전문적 영농대행조직을 육성하기로 함.
 - 농발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발법)」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을 제도화함.
 - 1994년 「농발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개편됨.
 - 농업법인 제도의 법적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1999년 제정)으로 이관되었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법)」(2009년 제정)로 이관됨.
-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음.

- 현행 농업법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농업법인 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적용받는 협업체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받는 기업체로 설계되어 있지만,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에 미약하고, 실질적인 사업운영상 두 조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는 상태에 있음.
 -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복합사업이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함. 농업법인은 농업생산 뿐 아니라 농산물유통·가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농업경영체와 동일한 형태로 지원하기 어려움. 동시에 농업서비스 사업을 전담하는 농업법인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투기가 가능하게 됨.
 - 셋째,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음.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요건의 구비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의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이로써 농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산물의 유통·가공사업 및 농업관련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나, 복합사업으로 농업생산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농업법인도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이 결과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한편,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정책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이 있음.
- 농업법인의 제도적 문제점과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과 농지소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이 기준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최근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1.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농업법인의 사업 중에서 농지소유가 필요한 사업과 농지소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로써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인으로 구분되는 제도적 체계를 제안하고, 농지투기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현황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 현황을 분석함.
 - 농업·농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현황 분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중에서 산업, 사업, 영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농업·농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내용을 파악함.
 -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 현황 분석은 현행 법령 중에서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농업법인과 관련된성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를 분석함.
 - 독일에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의 한 유형으로 있는 제도적 특성과 더불어 농업법인의 사업이 농업생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분석함.
 - 일본에서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이 갖는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과 농지소유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앞서 분석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을 마련함.
 - 농지소유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은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뉘고, ①농업법인 제도에 의한 관리, ②농지제도에 의한 관리, ③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의한 관리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제5장에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개편방안을 제시함.
 - 먼저 사업범위 확대 기준을 검토하고, 사업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정리함.

2.2. 연구방법

-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임.
 - 농업법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농업법인 제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운영실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함.
 - 농지소유 문제와 관련하여 농지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농업법인 제도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함.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상 사업들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농림사업지침 등을 분석함.
- 외국제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법제화 현황 분석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DB를 조사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3.1.1. 농업생산법인 제도화 관련 연구 동향

-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제안한 연구는 김수석 외(2006)에서 출발함. 이 연구에 따르면,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경영체가 되고,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 농업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자유롭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법인이 됨.
 - 농업생산법인은 다시 기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지향하는 법인과 가족농적 소규모 경영체를 지향하는 농업법인으로 세분됨. 이것의 구체적 형태는 영농

조합법인과 “유한영농법인”으로 제도화되는데,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것이고, “유한영농법인”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임.

- 농업서비스법인 유형에 속하는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고,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영역과 비농업인 제한 규정, 농지소유 규정 등을 변경함. 다시 말해,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지만, 비농업부문의 투자와 경영은 완전히 자유롭게 됨<표 1-1>.

<표 1-1> 김수석 외(2006) 연구의 농업법인제도 개편안

일반/특수법인	법인의 유형	제도적 형태	특성
농업법인 (특수법인)	농업생산법인	영농조합법인	기업농적 대규모 생산법인
		“유한영농법인”	가족농적 소규모 생산법인
	농업서비스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의 유통·가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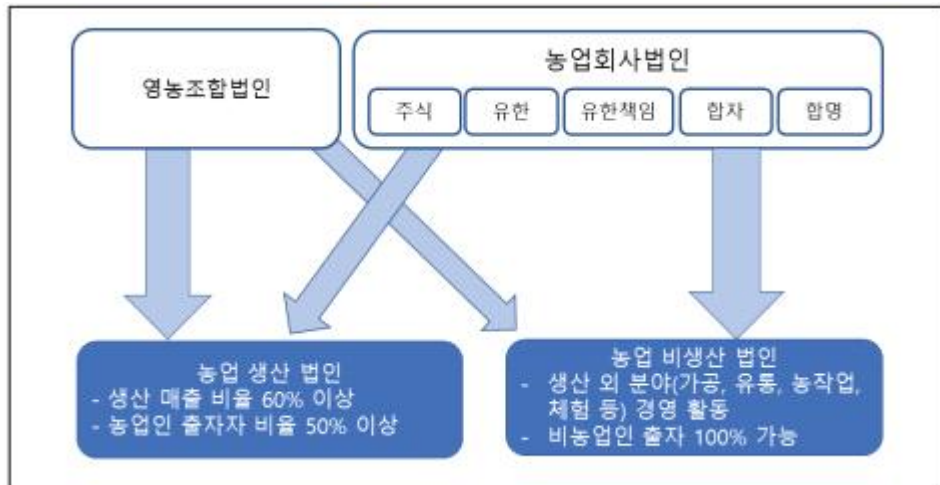
자료: 김수석 외(2006), p132

- 김병률 외(2017)에서는 기존의 농업법인의 유형, 즉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제도적 형태와 관계없이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제안함. 이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농정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법인제도를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의 체계로 변경함. 농업법인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됨. 농업법인을 새로운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게 되면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과 동일한 농업생산자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등을 담당하는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자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인의 경영과 출자에서 농업인 제한규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됨.

- 여기서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생산법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농업생산법인의 기준을 법인경영체의 농업생산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 되는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함.

- 마상진 외(2020)는 농업생산법인과 비생산법인의 구분을 농업 생산 활동 비중이 비생산 활동을 포함한 경영체 전체 활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여기서는 농업생산 매출액 비율 60% 이상과 농업인 출자자 비율 50% 이상을 농업생산법인의 기준으로 제시함<그림 1-1>.

<그림 1-1> 마상진 외(2020) 연구의 농업법인제도 개편안



자료: 마상진 외(2020), p.172.

3.1.2.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연구 동향

- 김명아 외(2020)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법제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제언을 함.
 - 먼저 현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 변화에도 사업범위가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범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봄.
 -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없는 사업을 타 법령에서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함.
 - 이 연구에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대상으로 제안하는 사업은 ①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사업, ② 스마트팜 관련 기계 및 설비의 제작과 유통 사업, ③ 교육·컨설팅 사업, ④ 사회적 농업 등이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상의 사업이 주사업이 되고, 타 법령상의 사업은 부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로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농업법인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은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농업환경 변화나 타 법 개정 등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의 경험이 축적되는 대로 관련 결과를 반영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제 설계로 바람직함.

3.2.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우선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법인과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농업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임.
 -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을 농업법인의 특정 사업(농업의 경영)으로 한정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할 것임.
- 다음으로 본 연구는 농지소유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세밀하게 제시할 것임.
 -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관리방안을 ① 사전적 관리, ② 사후적 관리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관리에서 다시 ① 농업법인 제도에 의한 관리, ② 농지제도에 의한 관리, ③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의한 관리로 세분해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임.
- 마지막으로, 농지소유 농업법인 기준 도입을 전제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기준을 검토하고, 정책적 수요에 따라 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정리할 것임.

2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분석

1. 농업·농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현황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중에서 농업·농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DB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본문에 정리한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은 부록 1의 <부표 1>에 수록함.
- <표 2-1>에 정리한 내용 중에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사항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법)」에 의한 축산계열화사업이 있음.
-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자격 중 하나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이 농업법인의 사업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축산계열화사업이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함(축산계열화법 제2조 제4호).
 - 축산계열화사업은 수직적 통합과정을 통해 생산과정에 개입하지만, 동시에 출하받은 축산물을 유통 또는 가공·유통하는 기능을 담당함.
 -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은 농업법인의 사업 중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 농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구분	법령	내용
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p> <p>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p> <p>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p> <p>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p> <p>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기능성 양잠산업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p> <p>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p> <p>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p> <p>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하위법령 없음)</p>
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p>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치를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농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 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농어촌정비법	<p>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p>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구분	법령	내용
		<p>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농어촌 산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말산업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p>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 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3. 말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밀산업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p>가.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p> <p>나. 밀 제분업</p> <p>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p> <p>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구분	법령	내용
쌀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쌀가공업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양봉산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인삼산업	인삼산업법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
전통주 등의 산업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종자산업	종자산업법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종자업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業)으로 하는 것
육묘업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축산업	축산법	종축업: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부화업: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정액등처리업: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가축사육업: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친환경농어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축산계열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현황 분석

○ 현행 전체 법령 중에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DB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본문에 정리한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은 부록 1의 <부표 2>에 수록함.

<표 2-2>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현황

법령	소관부처	조항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제2조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에게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주택도시시기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8조 제3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지장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1.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 이하로 설치(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해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2) 관리용 건축물: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 2.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화훼전시판매시설: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단,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불가), 건축연면적은 3,30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8조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 이하로 설치(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해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2) 관리용 건축물: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2조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제4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농축산임·어업용 기가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법령	소관부처	조항	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제12조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①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 시설, ②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양식장·낙시터 시설, 폐목재·짚·음식물 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③부지면적 3천㎡ 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④부지면적 200㎡미만의 농막,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⑤3만㎡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주체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제126조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규정 명시
		제128조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 명시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제19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제112조의 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7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계열화사업 등록 주체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명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15조의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 상한(밭·과수원 : 해당농지 포함 10만㎡, 논 : 50만㎡, 초지 : 50만㎡)
		제17조의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상한은 50만㎡
		제19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규정 명시
		제26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은 50만㎡(단, 25명 이상일 경우 400만㎡)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 항목은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법령	소관부처	조항	내용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농업법인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제8조의 3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제10조 농업회사법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13조	매립지 등 중 농지의 임대 대상 자격자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명시
		제15조	매립지 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명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자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명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	농촌진흥청	제20조	경비 출연 또는 지원기관으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제31조	농업회사법인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제67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68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49조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가함
		제51조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25조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36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주체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명시
병역법	병무청	제38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3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1. 독일

1.1. 농업경영체

1.1.1. 농업경영체 개념과 유형

가. 개념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Landwirtschaftlicher Betrieb)는 농장(Hof)이라는 물적 요소와 경영주 및 종사자를 의미하는 인적 요소가 결부된 사업체를 말함.
 -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물적 기반을 의미하는 농장에는 농지와 농장가옥, 부속시설 및 농기계 등이 속함.
 - 독일에서 농장이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농업경영체의 창업(등록)시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를 충족시킬 때와 농장상속법 원리(Anerbenrecht)에 따라 농장을 분할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할 때임.¹⁾

나. 경영체의 유형화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의 법적 유형은 크게 ① 개별경영체, ② 인적 회사, ③ 법인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됨. 이는 일반 산업부문의 경영체의 법적 형태와 동일함.

1) 가장 대표적인 농장상속법인 「호프법(Höfeordnung)」에 따르면, 농장(Hof)은 농지와 임야 중에서 그것의 경영가치(Wirtschaftswert)가 1만 유로 이상 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결부되어 있는 농장가옥(Hofstelle)을 의미함(호프법 제1조 제1항). 여기서 농지와 농장가옥은 둘이 합쳐서 하나의 경영단위 즉 농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농장가옥을 갖지 못한 농지나 농지없는 농장가옥은 농장(호프)이 될 수 없음.

- 독일에서는 회사의 구성원(혹은 구성원의 일부)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 이 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연합체, 즉 인적 회사로 분류함. 이에 따라 인적 회사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발생한 이윤은 구성원들에게 배분됨.
 - 인적 회사 유형에는 ① 민법상의 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②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③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 등이 있음.
- 법인은 구성원들이 유한책임을 가지며 회사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자본회사로서 여기에는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와 주식회사(AG) 등 「상법」 상의 자본회사와 「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gesetz)」 상의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이 있음.

다. 유형별 특성

① 개별경영체

- 농가 단위의 농업경영체인 개별경영체는 농업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영체임. 농산물의 유통, 가공이 중심이 되는 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에 속하지 않음.
 - 독일에서 새로 창업하는 농업경영체가 취미농이 아닌 온전한 개별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해야 함. 축산경영체는 추가적으로 축산업등록을 해야 함.
 - 취미농을 제외한 개별경영체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 규정을 적용받고, 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받음.

② 인적 회사

- 민법상 회사(GbR)는 인적 회사 형태의 농업경영체 중 가장 선호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민법 규정(민법 705~740조)을 받음.
 - 최소 2명의 출자자가 요구되나 최소액 규정이 없음.
 - 의결기관을 갖지 않고 구성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함.
 - 감사가 회사 내부관계를 규율해야 함.
 - 사업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실적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구성원 모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OHG)는 민법상 회사와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나, 상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보다 민법상 회사보다 좀 더 상업적 성격을 가짐.

- 이익배분은 출자자본에 대해 4%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성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따름.

- 합자회사(KG)는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한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③ 법인

- 독일에서 법인은 사람보다 자본이 더 중요한 구성요건이 되는 자본회사와 조합원의 유한책임에 기반한 등록조합으로 구성됨.

- 유한회사(GmbH)는 자기자본(회사원의 출자) 중심으로 경영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회사이며,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임.

- 최소출자액이 25,000 유로이며, 외부의 전문경영인 활용이 가능함.

- 주식회사는 자기자본 이외에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할 때 이 유형을 선택함.

- 경영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의해 제한을 받음.

- 등록조합(eG)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등록부에 등록된 협동조합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지위임. 따라서 공식화된 협동조합은 모두 등록조합이라 볼 수 있고, 법인에 속함. 다시 말해, 등록조합은 모든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뿐 아니라 일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조합 등도 모두 등록조합에 해당함.

- 등록조합의 설립에는 최소 3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④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

-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조합은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즉 농업생산조합이 됨. 그런데 농업생산조합이란 용어가 구동독 체제하의 집단농장에 대한 명칭(농업생산조합, Landwirtschaftliche Produktivgenossenschaft, LPG)과 혼동되기 때문에 이 생산협동조합을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라 명명함.

- 농업생산협동조합인 영농조합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았음. 통일로 인해 구동독의 집단농장(LPG)이 해체되면서 생기게 되었고, 현재 동독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경영체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영농조합의 법적, 제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은 법적으로 등록조합인 법인임.
- 영농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인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 조합(영농조합)으로 분류됨.²⁾
-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임. 따라서 심사협회에 가입하여 경영실적을 심사받아야 함.

1.1.2. 농업경영체 구성 현황

- 2020년 기준 독일의 농업경영체 수는 262,800개소인데, 이중 개인경영체(농가)가 228,300개소로 전체의 86.9%를 차지함<표 3-1>.
 - 인적회사와 법인은 각각 28,600개소, 5,900개소로 수적 비중이 10.9%와 2.2%를 차지함.
 - 하지만 농지 비중은 개인경영체가 62.2%, 인적회사 20.5%, 법인 17.3%로 인적회사와 법인의 보유면적이 전체 경지의 37%를 초과함.
- 농업경영체 구성에 있어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은 커다란 지역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표 3-2>.
 - 서독지역은 전형적인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인적회사와 법인을 합한 농업경영체의 비율이 약 11%, 보유경작지 비율이 약 20.6% 수준에 있음. 특히 자본회사인 법인의 경작면적은 1% 수준에 불과함.
 - 반면에 동독지역은 대규모의 법인이 농업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수적으로 15.6%를 차지하는 법인경영체가 동독지역 농경지의 약 50%를 경작하고 있음.

<표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유형별 구성

단위: 천 개소, 천ha, %

구분	2010		2020	
	경영체 수 (비율)	농지면적 (비율)	경영체 수 (비율)	농지면적 (비율)
개인경영체(농가)	273.0 (91.3)	11,084.7 (66.4)	228.3 (86.9)	10,324.4 (62.2)
인적회사	21.0 (7.0)	2,664.1 (15.9)	28.6 (10.9)	3,399.0 (20.5)
법인	5.1 (1.7)	2,955.2 (17.7)	5.9 (2.2)	2,871.6 (17.3)
합계	299.1 (100)	16,704.0 (100)	262.8 (100)	16,595.0 (100)

자료: BMEL(2022), pp. 25-27.

2) 농업경영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심사협회에 가입하면, 그 경영체는 라이파이젠협회(DRV)의 영농조합 중 하나로 파악되고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협회인 독일협동조합 및 라이파이젠협회(Deutscher Genossenschafts- und Raiffeisenverband, DGRV)의 회원이 됨.

<표 3-2>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농업경영체 구성 비교 - 2020년

단위: %, ha

구분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법인		
	경영체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 경지면적	경영체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 경지면적	경영체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 경지면적
서독지역	88.6	79.4	42	10.5	19.4	86	0.8	1.2	66
동독지역	70.0	27.5	87	14.4	22.7	351	15.6	49.8	708
독일전체	86.9	62.2	45	10.9	20.5	119	2.2	17.3	483

자료: BMEL(2022), p.27

- 독일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체당 평균경지면적은 2020년 현재 개인경영체 45ha, 인적회사 119ha, 법인 483ha로 나타남(BMEL 2022: 27).

1.2. 농업경영체 등록과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1.2.1. 농업경영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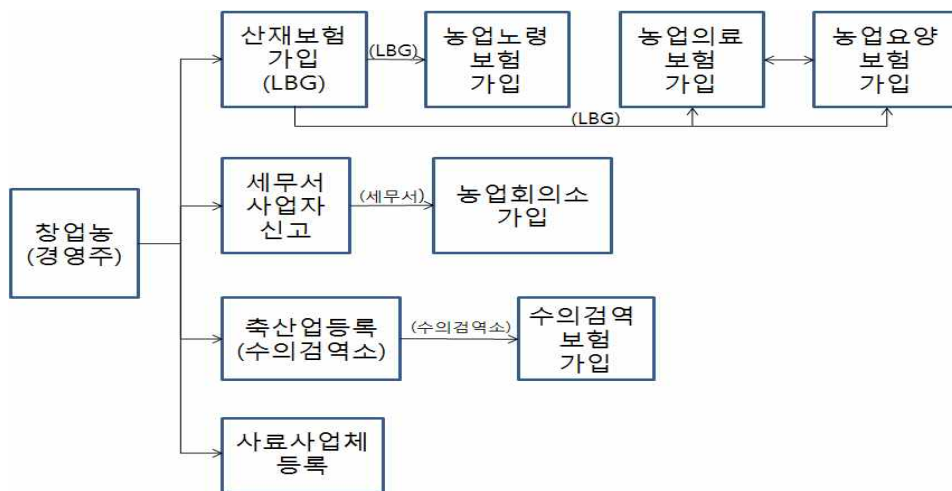
가. 개요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세계집행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임.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말함.
 - 이런 절차를 마친 농업경영체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등록으로 등록절차가 이루어짐.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접지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고 있음.

나.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이러한 의무적 등록과정은 모든 농업경영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됨. 다시 말해 취미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경영체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의무만 있지만,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주업농 및 부업농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주가 거쳐야 하는 신고·가입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그림 3-1>.
 - ① 농업경영체를 창업하는 경영주는 먼저 농업직능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 LBG)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농업노령보험과 농업의료보험 및 농업요양보험으로 구성된 나머지 농업관련 사회보험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최소영농규모 충족) 농업직능조합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됨.
 - ② 농업경영주는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함. 사업자 신고로 농지를 포함한 농장의 가치가 평가되고 과세대상으로 등록됨. 그리고 이 사업자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됨.
 - ③ 축산업을 전업 내지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을 함. 축산업등록을 통해 수의검역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됨.
 - ④ 사료를 자가소비용 혹은 판매용으로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사업체는 이를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신고·등록함.

<그림 2-1> 독일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자료: 김수석 외(2013), p.29.

-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하나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 즉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함. 다시 말해 새로 창업하는 농업경영체가 취미농이 아닌 온전한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³⁾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하며 축산경영체의 경우 축산업등록을 해야 함.
- 그런데 농업경영체가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영농규모 이상의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됨.
 - 최소영농규모를 갖추지 못한 사업체는 취미농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최소영농규모(Mindestgröß)에 대한 규정은 2013년 이전에는 주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2013년 지역별 농업사회보험공단이 「농림원예업 사회보험공단(Sozialversicherung für Landwirtschaft, Forsten und Gartenbau, SVLFG)」으로 통합된 이후 2014년 1월 1일부터 연방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표 3-3>⁴⁾

<표 3-3> 독일 농업관련 4대 보험 가입의 최소영농규모 기준

생산방식	최소규모	생산방식	최소규모
농림업:		원예업:	
- 경종농업	농경지 8ha	높은 유리온실, 화훼	농경지 0.03ha
- 방목 축산	농경지(초지) 16ha	높은 유리온실, 채소	농경지 0.05ha
- 산림업	산지 75ha	낮은 유리온실, 화훼	농경지 0.05ha
- 특작	농경지 2.2ha	낮은 유리온실, 채소	농경지 0.08ha
- 크리스마스 트리	농경지 2.5ha	노지 화훼	농경지 0.25ha
- 포도주 생산	농경지 2.0ha	묘목 생산	농경지 0.3ha
- 포도 재배	농경지 0.5ha	버섯 재배	농경지 0.03ha
법적 규정:		어업 및 양식업:	
- 내수면어업	120일 노동일수	송어	120일 노동일수
- 양봉업	벌통(봉군) 100개	잉어 및 기타 어류	10ha 저수지 면적
- 양 유목 사육	큰 가축 240 마리	어류 양식업	120일 노동일수

자료: SVLFG(2014), Mindestgrößenbeschluss der landwirtschaftlichen Alterskasse.

3) 여기서 말하는 4대 사회보험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4대 보험, 즉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산재보험, 농업연금보험, 농업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을 말함.

4) 다만, 양봉업과 내수면어업의 최소규모, 방목하는 양의 최소규모에 대해서는 법(ALG)에서 규정해 두고 있음. 양봉업은 100개의 벌통, 내수면어업은 연간 120일의 노동소요, 양 사육은 큰 양 240마리를 최소영농규모로 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세 면제, 유류세 면제 또는 감면.
 - 주업농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억제영역인 자유공간에 농업용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음.

다.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경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있음. 이러한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미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들은 이를 이행하고 있음.
-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 등록임.
 - EU 규정에 따른 IACS를 독일이 회원국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InVeKoS(Integriertes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임.
- 2004년 12월부터 InVeKoS 체제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 「InVeKoS 데이터 법(InVeKoS-Daten-Gesetz)」의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관한 기본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
 - 독일에서 농업행정은 각 주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도 주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등록제의 관리를 위해 각 주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기본데이터를 등록·관리하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Adressdatenstelle)’이 지정됨.⁵⁾
-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15자리(국가번호 3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구성항목은 <그림 3-2>와 같음.⁶⁾

5) 농업경영체 등록을 담당하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은 별도로 신설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농업 관련 정보담당 기구에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 니테르작센 주의 경우 기존의 축산등록 관리기구인 사단법인 축산통합정보시스템(Vereinigte Informationssysteme Tierhaltung, VIT)에서 이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6) 독일은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여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림 2-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2	7	6												
---	---	---	--	--	--	--	--	--	--	--	--	--	--	--

<국가번호>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

* 게마인데(Gemeinde) : 독일의 행정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

- 등록정보 중 인적 사항 데이터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체 주소: 경영체 이름, 경영주 이름, 경영체의 법적 형태,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 등록 사유: 농장양도계약에 의한 조기양도, 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전체농장 양도, 농장의 분할, 경영체 창설
 - 법인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여러 곳에 있는 사업장(경영체)을 통합하는 통합경영체를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에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같이 기재함.
 - 등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
 - 영농유형: 축산을 포함한 농업, 축산 없는 농업, 취미농업, 도축업, 가축유통업, 정책프로그램 대상 농업
 - 가축(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사육두수와 축산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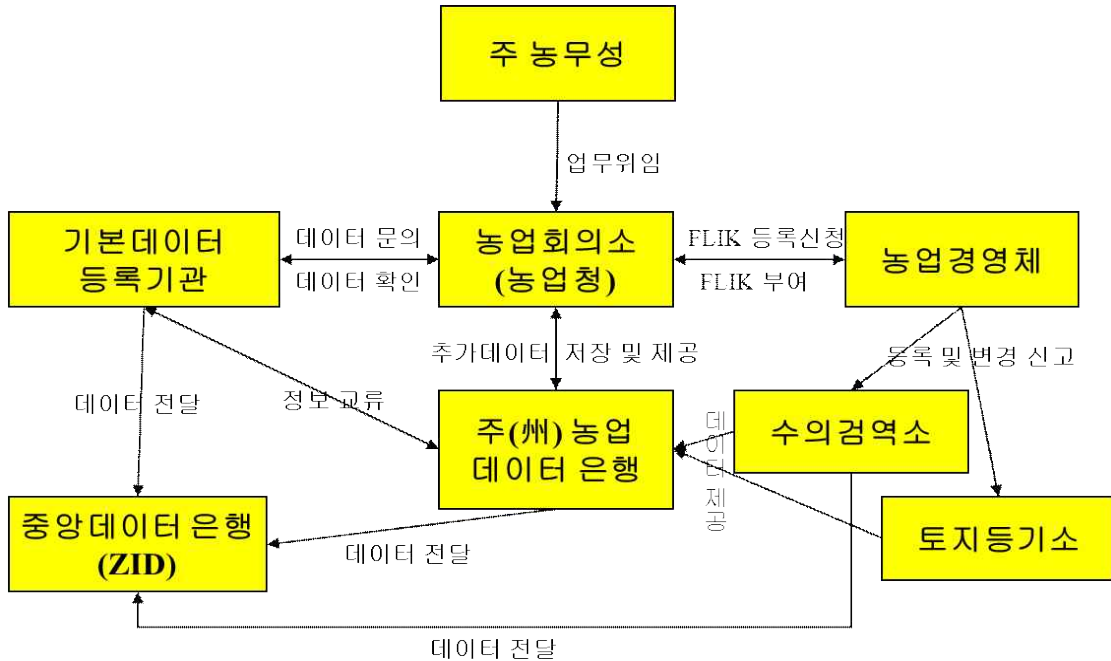
- 경지 데이터는 ‘경지식별번호(Flächenidentifikator, FLIK)’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FLIK는 경지대장(Flurbuch)⁷⁾ 상의 최소단위인 필지(Flurstück) 중에서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부여하는 일종의 지번에 해당함.
 - FLIK는 6자리 문자와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6자리 문자는 2자리 국가코드(DE)와 2자리 주(州) 코드, 그리고 농업 InVeKoS를 의미하는 LI로 되어 있고, 10자리 숫자는 주별로 재량에 따라 임의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음.
 - FLIK 신청은 경작자가 InVeKoS 관할 관청(농업회의소 혹은 농업청)에 하고,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토지등기소(Katasteramt)의 경지대장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이루어짐.

- 축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속하는 축산업등록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함.
 - 수의검역소가 축산업등록정보를 주(州)농업데이터은행에 전달하여 저장하는데,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의 신청기관인 농업회의소(농업청)와 관리기관인 기본 데이터 등록기관이 활용함.

7) 독일에서는 토지 소유권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토지대장(Grundbuch)과 별도로 경지의 일반적 활용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경지대장이 있음. 필지 또한 소유필지(Grundstück)와 구별되는 경작필지(Flurstück)가 있음.

- 이처럼 독일의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EU 규정에 의한 경영체의 인력, 경지정보 등록과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에 의한 축산정보 등록을 종합하여 구성함.

<그림 2-3>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체계



자료: 김수석 외(2013), p.39.

1.2.2. 조세법상 농림업 활동의 개념과 세제 우대

가. 조세법상 농림업 활동 개념

-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법상 농림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제상 우대가 주어짐.
-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일반 ‘산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과 구별되는데,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농림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산업활동’이 있음.
 - 농업경영체의 활동 중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 법인경영체(자본회사)의 생산활동과 ②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임.
-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별경영체, 인적 회사의 활동이고, 축산은 다음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되며, 이를 초과하면 전체가 ‘산업활동’으로 간주됨.⁸⁾

8) 가치평가법(Bewertungsgesetz) 제51조 1a항 참조.

-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가축단위(Vieheinheiten, VE) 준수
 - 그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가축단위(VE) 준수
 - 그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가축단위(VE) 준수
 - 그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가축단위(VE) 준수
 - 100ha 초과하는 사육지에는 ha당 1.5 가축단위(VE) 준수
-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활동이 농림업 생산 중심이어야 하고, 그 요건은 개별 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소득세의 경우 농림업생산 매출액이 농업경영체 매출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됨.⁹⁾

나. 소득세법상 농림업 활동 인정 조건과 세제 혜택

- 독일에서 소득세는 7가지 소득원천을 합산하여 부과함.
- 소득세 대상은 경영체 수입(3가지 유형), 개인의 수입에서 도출되는 잉여수입(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경영체 수입은 ①농림업, ②일반 산업, ③자영업으로 구분되고,
 - 잉여수입은 ①비자영노동, ②자본자산, ③임대사업, ④기타 수입으로 구분됨.
- 소득세 지침(Einkommensteuerrichtlinien, EStR)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은 농림업 생산활동이 기본이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부업을 구성하거나 기타 경제활동이 농림업 생산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EStR 제15.5조 제1항).
- 농림업 생산활동이 아니지만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제활동은 ①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는 유형과 ② 용역 및 임대 서비스만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EStR 제15.5조 제11항).
- 첫째, 두 유형의 경제활동 각각의 매출액이 경영체 총매출액의 1/3 이하이고 51,500유로 이하일 것.
 - 둘째, 두 유형의 경제활동 매출액 합계가 경영체 총매출액의 50%를 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비생산활동 중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9) 독일에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데, 그중 소득세 우대 방식이 가장 특징적임.

- ① 주업인 농업생산과 연관을 갖는 부업 경영(EStR 제15.5조 제3항).
 - 주업에서 생산한 원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때 농산물의 가공 수준이 제1단계 가공(예: 밀가루, 버터)이면 농림업으로 인정하지만, 제2단계 가공(예: 빵, 소시지)이면 산업활동으로 간주함. 타인이 생산한 원료를 가공하는 것도 산업활동으로 간주함.
 - 다만 이런 경제활동이 직판장 개설로 판매되는 경우 농림업 활동의 인정 한도(총매출액의 1/3,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내에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함.
 - ② 유기적 폐기물(organische Abfälle)을 직접 가치증식에 활용하는 경우(EStR 제15.5조 제4항).
 - 부업 차원의 원료 가공을 통해 유기적 폐기물을 처분
 - 유기적 폐기물을 농경지에 뿌리거나 가축의 사료로 활용
 - ③ 자가경영을 통한 농림업 생산물과 함께 타인 경영 혹은 일반산업 생산물이 판매되는 경우, 그 혼합생산물의 매출을 농림업 활동의 인정 한도(총매출액의 1/3,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내에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EStR 제15.5조 제5항, 제6항).
 - ④ 자가경영을 통한 농림업생산물의 판매와 결부된 용역 서비스 제공은 농림업 활동의 인정 한도(총매출액의 1/3,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내에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EStR 제15.5조 제7항).
 - ⑤ 농림업 경영자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의 판매는 농림업 활동의 인정 한도(총매출액의 1/3,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내에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EStR 제15.5조 제8항).
-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비생산활동 중 용역 및 임대 서비스만으로 구성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 자가경영에 사용하는 농기구를 다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농기계 임대), 농림업 활동의 인정 한도(총매출액의 1/3, 해당 수입액 51,500유로) 내에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EStR 제15.5조 제9항).
 - 단, 자가경영에 이용하는 농기계의 이용률이 최소 10%는 되어야 함.
 - ② 농림업 경영자가 자가경영의 생산물이나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경영체에 용역(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농림업 활동의 인정 한도(총매출액의 1/3, 해당 수입액 51,500유로) 내에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EStR 제15.5조 제10항).
 - 단, 제공되는 노동은 농림업 활동과 기능적 연관이 있어야 함.

<표 3-4> 독일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 기준

제1차 기준			
재화공급과 관련되는 유형 (제1유형)		용역 및 임대 서비스 유형 (제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과 연관을 갖는 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적 폐기물 활용 타인 경영/일반산업 생산물과 결합 판매 자경 생산물의 판매와 결부된 용역 제공 농업경영체의 부업적 요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경영 농기계 (부분) 임대 농업관련 임노동 제공 	
↓	↓	↓	↓
총매출액의 1/3이하 및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이하	총매출액의 1/3 초과 혹은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초과	총매출액의 1/3이하 및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이하	총매출액의 1/3 초과 혹은 해당 매출액 51,500유로 초과
↓	↓	↓	↓
농림업 활동	산업 활동	농림업 활동	산업 활동
제2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기준을 통과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매출액 합이 경영체 총매출액의 1/2 이하이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면 산업 활동으로 간주 			

자료: 저자 작성

-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활동에 대한 적용방식이 개별 농업경영체와 인적 회사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남.
 - 개별농업경영체의 경우, 농림업 활동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만 산업 활동의 매출로 간주함.
 - 인적 회사의 경우, 농림업 활동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의 활동이 산업활동으로 간주됨. 다시 말해, 인적 회사가 더 이상 농업경영체가 아니라 일반 산업체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함.
-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이 우대받는 부분은 특별공제에 있음. 농림업 공제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30,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900유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1,4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800유로를 공제함(소득세법 제13조 제3항).
 - 한편, 부기 기장의 의무가 없거나(매출액 60만 유로 이하, 연간 순이익 6만 유로 이하일 때 해당), 50 가축단위(VE) 이하의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림업의 수입 산정 시 평균값(ha당 350유로 혹은 VE당 300유로)을 적용함(소득세법 제13a 조).

다. 매출세법상의 농림업 활동 인정 조건과 세제 혜택

- ‘매출세(Umsatzsteuer)’로 명명되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농림업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정규방식과 평균방식으로 구성됨.¹⁰⁾

<표 3-5>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규과세 정산방식

단위: 유로, %

구분	원가	세율	세액	거래가액
영농자재 구입	15,000	19	2,850	17,850
곡물 판매	45,000	7	3,150	48,150
부가가치세 차액			300	

자료: 저자 작성

- 정규과세방식을 보면,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통상 세율이 19%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과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은 7%임(UStG 제24조 제4항).
 - 정산을 통해 농업경영체가 판매한 농산물(임산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총액이 농업경영체가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총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세무서에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음.
 - 예컨대, <표 3-5>와 같은 경우 해당 경영체는 300유로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평균과세방식은 정규방식처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림업경영체가 판매하는 상품에 10.7%(농업), 5.5%(임업)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UStG 제12조 및 제24조).
 - 법인이 아닌 개별경영체와 인적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서 정규방식과 평균방식 중 양자택일할 수 있음.
 - 다만, (인적 회사가 아닌) 법인경영체, 임대인, 자가생산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업체는 평균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없음.

10) 「매출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제24조 참조.

2. 일본

2.1. 농업법인 제도

2.1.1. 일반현황

- 농업법인은 수도작과 같이 토지이용형 농업을 비롯해, 시설원예, 축산 등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총칭함.
 - 농업법인은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행정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음.
- 농업법인은 조직형태에 따라 「회사법」에 근거한 주식회사나 합명·합자회사, 합동회사와 「농협법」에 근거한 농사조합법인으로 나눌 수 있음.

<표 3-6> 주식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차이

구분	주식회사	농사조합법인
근거법	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자본금	있음(1엔 이상)	있음(출자제 경우는 3엔 이상)
구성원	1명 이상	농민 3명 이상
기본방침 결정	1주 1의결권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	1인 1표제에 의한 총회 의결
임원	① 중역 1명 이상(필수) ② 감사(임의·주주 외도 가능)	① 이사 1명 이상(필수, 농민인 조합원만) ② 감사(임의, 조합원 외도 가능)
사업 제한	제한없음 (농지소유적격법인의 경우는 농업·농업관련 사업이 매출액의 50%)	농업경영법인(2호법인)의 경우는 농업·농업관련 사업으로 한정
법인과세	모든 소득 과세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경우, 보통법인으로서 연 소득 800만 엔 이하 15%, 연 소득 800만 엔 초과 23.2%)	모든 소득 과세 (종사분량 배당제의 경우, 협동조합 등으로서 연 소득 800만 엔 이하 15%, 연 소득 800만 엔 초과 19%) (확정급여지불제의 경우, 보통법인으로서 연 소득 800만 엔 이하 15%, 연 소득 800만 엔 초과 23.2%)
사업세	자본금 1억 원 초과 법인 외형표준과세 자본금 1억 원 이하 법인 연 소득 400만 엔 이하 3.5% 연 소득 400만 엔~800만 엔 이하 5.3% 연 소득 800만 엔 초과 7.0%	농지소유적격법인이 수행하는 농업 (축산업, 농작업수탁은 제외)은 비과세*
설립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 7/1000 (단, 15만 엔 미만의 경우 15만 엔)	비과세
정관 인증	필요함	필요 없음
조직변경	합동회사로 변경할 수 있으나 농사조합법인으로의 변경은 불가	주식회사 또는 일반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합동회사로의 직접변경은 불가

주1) 농사조합법인에 관한 사업세의 과세 판정은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에서 확정함

2) 세율은 2019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2019),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

○ 농업법인의 조직형태 중 주식회사 비율이 가장 높음<표 3-7>.

<표 3-7> 일본 농업법인의 유형별 구성

단위 : 개	계	회사				농사조합법인
		소계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합동회사	
2015년	22,772	16,573	16,094	150	329	6,199
2020년	27,306	19,977	18,942	168	867	7,329

자료: 농림수산성(2020), 농림업센서스.

2.1.2. 농사조합법인

○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의 협업을 도모하는 법인으로, 농사조합법인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조합원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호 법인 : 농업과 관련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해당시설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운반, 가공 또는 저장 등의 사업을 포함)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 2호 법인 : 농업경영(해당 농업경영과 관련한 사업이자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용한 제조 또는 가공,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한 사업 및 농업과 병행하는 임업 경영을 포함)
- 3호 법인 : 1호 법인 및 2호 법인에 부대하는 사업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① 농축산물의 저장, 운반 또는 판매
- ②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변환하여 얻어진 전기 또는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얻어진 열의 공급
- ③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 제조
- ④ 농작업 수탁
- ⑤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 및 운영
- ⑥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을 행하는 사람의 숙박 등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 필요한 업무 제공
- ⑦ 농지에 지주를 세워 설치하는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 아래에서 경작을 행할 경우, 해당 시설에 의한 전기 공급

- 농사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인 농민이 원칙이나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지중간관리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해당 농사조합법인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해 사업에 관한 현물출자 등을 행한 경우로 한정함.
 - 해당 농사조합법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물자 공급 또는 업무 제공을 계속적으로 수탁하고 있는 개인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신상품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농사조합법인의 원활한 사업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른 지역계획에 농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기재된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해당 농사조합법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면서 해당 농사조합법인의 사업 원활화에 기여하는 영농법인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농사조합법인 설립은 3명 이상의 농민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임원 선출 등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짐.
 - 설립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등기부 사본과 정관을 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함.
- 농사조합법인의 해산사유는 총회의 해산 의결, 합병, 파산 절차 개시결정, 존립시기 만료, 행정부서에 의한 해산명령, 조합원 3명 미만인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된 경우임.
- 행정관청에서는 설립, 해산, 합병 및 정관 변경 신고와 보고 징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필요조치 명령 또는 해산명령을 통해 관리감독함.

2.2. 농지소유적격법인

2.2.1. 정의

-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법률용어로 「농지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에 관한 권리 취득이 가능한 법인”을 의미.
 - 농지소유적격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법인의 조직형태인 농사조합법인, 회사 중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을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 칭함.

2.2.2. 자격요건

가. 법인형태

-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공개회사가 아닐 것), 또는 지분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의 총칭)일 것.
-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을 양도에 의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주식양도제한)으로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
 - 주식의 양수인이 종업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 한해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정적 주식양도제한은 인정되지 않음.

나. 사업요건

- 법인의 주요 사업이 농업일 것.
 - 농업에는 관련사업으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 가공업 등(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함.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농협법」 제72조의 10 제1항 제1호의 사업¹¹⁾을 포함함.
 - 법인의 주요 사업이 농업인지 여부는 그 판단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년간(이상기후 등에 의해 농업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해가 포함된 경우 해당년도를 뺀 직접 3개년) 농업 매출액이 사업 전체 매출액의 과반을 차지하는지로 판단함.
 - “농업과 관련한 사업”은 법인이 행하는 농업과 일차적인 관련을 가지며, 농업 생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말함.
- **(유의사항)** 농지소유자격법인이 기타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요건 충족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의 경영관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과 기타 사업의 계정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지도함.
 - 지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역 내에서 협의의 장을 마련해 이러한 사업의 실시에 대해 서로 논의하도록 농지소유자격법인에게 지도함.

다. 구성원 및 의결권 요건

11) 「농협법」 제72조의10 제1항 제1호의 사업은 농업과 관련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운반, 가공 또는 저장의 사업을 포함함)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을 말함.

○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 ①~⑧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갖는 의결권의 합계가 전체 주주 의결권의 과반을, 지분회사의 경우 아래 ①~⑧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수가 전체 사원 수의 과반을 차지할 것.

①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지상권·영소작권(永小作權)·사용대차에 의한 권리·임차권)을 법인에 이전(양도, 출자 등)한 개인¹²⁾ 또는 그 일반 계승인¹³⁾

②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는 개인(해당 농지의 상속인 또는 유산으로 증여받은 사람도 포함)

③ 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수익권의 설정 혹은 이전에 대해 「농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개인

④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대권에 근거하여 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는 농지중간관리기구에 해당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대권을 설정하고 있는 개인

⑤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사람

* 상시종사 판정기준 :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연간 150일 이상 종사할 것’,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연간 150일에 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일수(그 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60일) 이상일 것’

$$\frac{\text{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필요한 연간총근로일수}}{\text{법인의구성원수}} \times \frac{2}{3}$$

* 종사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법인에 이전하거나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위 또는 아래 산식에 따른 일수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됨.

$$\text{법인 농업에 필요한 연간총근로일수} \times \frac{\text{법인에 이전·설정·사용수익을 얻게 하는 농지등면적}}{\text{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등면적}}$$

⑥ 법인에 농작업¹⁴⁾을 위탁하고 있는 개인

⑦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7조 제3호에 명시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 현물출자를 시행한 농지중간관리기구

⑧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12) 구성원이 되기 전 권리이전을 행한 사람 중,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구성원이 된 자를 포함함.

13) 상속인 및 포괄수증자를 말함.

14)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적 작업」을 말함. 구체적으로 수도작은 경기·경운, 이앙 및 수확·탈곡의 기간 3작업, 보리 또는 대두는 경기·정지, 파종 및 수확, 기타 작물은 수도작 및 보리 또는 대두에 준한 농작업을 말함.

- **(특례)15** 자회사가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농지소유자격법인인 모회사로부터 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초지자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회사의 총의결권이 차지하는 모회사의 의결권 비율은 자회사의 농업관계자 의결권 비율로 인정됨.
 - 모회사가 자회사의 총의결권의 1/2 이상 출자하는 것도 가능함.

라. 임원 요건

- 법인의 상시종사자인 구성원이 이사 등(농사조합법인 : 이사, 지분회사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주식회사 : 중역)의 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을 것.
- 법인의 이사 등 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모두 상시종사자에 한함) 중 1인 이상이 해당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에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다고 인정될 것.
 - 단, 이사 등 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이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연간 종사일수의 50%를 넘는 일수 중 가장 적은 일수가 60일 미만인 때는 그 일수
- **(특례)16**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회사가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고 기초지자체 승인을 얻으면, 해당 계획에 기재된 모회사의 임원은 자회사의 농업상시종사 구성원인 임원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겸직 가능.
 - ① 모회사가 자회사의 총 의결권의 과반을 갖고 있을 것.
 - * 이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요건의 특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② 모회사가 인정농업인 또는 농지소유자격법인일 것.
 - ③ 겸직임원이 모회사의 농업상시종사자 또는 모회사의 주주일 것.
 - ④ 겸직임원이 자회사 농업에 30일 이상 종사할 것.
- **(유의사항 1)**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해, 다른 법인에서의 파견자,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자, 농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주소, 농업종사경험, 급여지불형태 또는 소득원 등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농업에 상시종사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유의사항 2)** 농지소유자격법인에 의한 농지 등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이사 중 대표권을 갖는 자는 농업을 경영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길 권장함.

15) 본 특례조치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름.

16) 본 특례조치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름.

2.2.3. 주요 사업 범위

- 농업은 경작·양축·축산 등임.
- 농업과 관련한 사업¹⁷⁾은 다음과 같음.
 -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용하는 제조·가공
 - * 예) 사과를 생산하는 법인이 자가 생산분에 더해 타 업체에서 구입한 사과를 원료로 주스 제조
 - 농축산물의 저장·운반·판매
 - * 예) 사과를 생산하는 법인이 자가 생산분에 더해 타 업체가 생산한 사과의 저장·운반·판매를 수행
 -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 제조
 - * 예) 법인이 자기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사료에 더해 타 업체에 판매를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
 - 농작업 수탁
 - * 예) 수도작 법인이 자가 생산분의 수확 뿐 아니라 타 업체의 수확 작업을 수탁함
 -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예) 관광농업이나 시민농원(농원이용방식만 해당) 등, 주로 도시의 시민에 의한 농작업 체험을 위한 시설 외, 농작업 체험형 숙박 또는 휴양시설, 이러한 시설 내에 설치된 농축산물 등의 판매시설이 포함됨.
- 농업과 병행해서 행하는 임업
 - 식림·육림·벌채·제탄 등

2.2.4. 농업위원회 정기 보고

-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 이외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관할 농업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¹⁸⁾.

17) 농지소유적격법인이 실시하는 사업이 농업과 일차원적인 관계를 가지며 농업생산의 안정발전에 도움되는 경우 농업과 관련한 사업에 해당함.

18)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정기 보고서는 부록 3을 참조.

- ① 법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② 현재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면적
 - ③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사업의 종류 및 매출액
 - ④ 법인의 구성원 성명(또는 명칭) 및 의결권
 - ⑤ 구성원으로부터 농지소유적격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이전한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면적
 - ⑥ 구성원 요건(p.33, ①~⑧)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소유적격법인의 구성원인 경우, 그 구성원이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한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중, 해당 농지중간관리기구가 그 농지소유적격법인에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면적
 - ⑦ 농지소유적격법인 구성원의 농업 종사 상황(법인의 농업경영에 한정)
 - ⑧ 구성원 요건(p.33, ①~⑧)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소유적격법인의 구성원인 경우, 그 구성원이 농지소유적격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농작업의 내용
 - ⑨ 승인회사가 농지소유적격법인의 구성원인 경우, 그 구성원(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들이 가지는 의결권
 - ⑩ 이사 등의 성명 및 주소, 농업 종사 상황(법인의 농업경영에 한정)
 - ⑪ 이사 등 또는 사용인 중,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위명 및 성명, 농업 종사 상황(사용인인 경우, 농업 및 농작업)
 - ⑫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이사 및 구성원의 다음 사업연도 농업 종사계획, 다음 사업연도에 필요한 농작업 및 이사 및 사용인의 종사계획, 이사의 국적 및 사용인의 성명, 주소 및 국적 등, 주요 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국적 등
- 위 보고서와 함께 정관 사본, 조합원 또는 주주 명부, 승인회사가 구성원인 경우 승인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승인회사의 주주 명부를 제출해야 함.

2.2.5.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 농지소유적격법인 제도 재검토 시, 단순 자산보유목적 또는 투기·투자목적의 농지취득 등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음.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농지 등의 권리 취득 시 농업위원회 등의 철저한 심사

(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호)

- 농업위원회에의 사업 상황 등 매년 보고(농지법 제6조 제1항)
 - 농지소유적격법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대한 농업위원회 권고(농지법 제6조 제2항)
 - 농업위원회에 의한 법인 사무소 현장 조사(농지법 제14조 제1항)
- 농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업위원회는 사업 상황 등 정기 보고 시 농지소유적격법인이 농지법 제3조의2의 허가 또는 농용지이용집적계획에 의해 농지 등의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한 때에는 수시로 정리해야 하며, 정기보고 외에 일상적으로 지도·조언 등의 활동을 통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함.

3. 시사점

3.1. 독일 사례의 시사점

- 독일의 농업법인 제도는 농업경영체의 한 유형으로 선택하는 방식임. 농업경영체 창업주는 개별농업경영체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른 농업인들과 공동으로 인적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자본회사인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함.¹⁹⁾
- 인적 회사를 포함하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농업경영체 일반의 사업범위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함.
-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지만, 두 개 유형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농업인에 기반한 경영체와 농업법인에 기반한 경영체가 운영하는 사업범위가 다름.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는 농업인의 사업인 농업의 경영 이외에 농업관련 가공·유통 및 서비스 사업이 포함됨.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와 일반 산업경영체와의 구별은 해당 경영체가 농업생산을 중점으로 하느냐 여부에 있음. 농업생산이 중심이 아닌 경영체는 조세법상 산업경영체로 분류됨.

19) 인적 회사와 자본회사는 다시 다양한 회사 유형들로 구분됨.

- 농업생산이 중심이 아닌 복합경영체가 농업경영체로 남고 싶으면 농업경영체와 산업경영체 두 개의 경영체로 분리할 수 있음.
 - 독일에서는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체는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따라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법인의 구별이 없음.
- 요컨대 독일에서는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개념이 농업생산경영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 독일에서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농업경영체 기준은 농업생산 매출액이 농업경영체 매출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 여기에 농업생산 이외의 사업도 농업생산 관련 활동으로 특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기준 도입을 검토할 때, 농업생산활동을 농업경영체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3.2. 일본 사례의 시사점

-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업경영 뿐 아니라 농업서비스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법인을 구별하기 위해 농지소유적격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① 법인 형태, ② 사업 요건, ③ 구성원 요건, ④ 임원 요건으로 구분됨.
- 위 요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 요건은 ‘최근 3개년 평균 ‘농업’에 관한 매출액이 사업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것’임.
 - 이때 ‘농업’에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사업이 포함됨.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농지소유적격법인 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특히,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사업 요건인 ‘농업’의 기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 설정 및 관리방안

1.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기준 설정

- 현행 농지제도에서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설립요건을 유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농지법 제2조 제3호).
-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한 요건에 농지이용 매출액 요건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농지이용 매출액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 농지를 이용한 사업 매출액이 매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되, 농지 이용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공익직불금을 사업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를 이용한 사업 매출액은 ① 농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액, ② 자가생산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판매액으로 정의함.
- 이때, 농업생산활동이 농업법인의 경제활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함.
 - 첫째, 독일의 농업경영체 제도 및 일본의 농지소유자격법인 제도
 - 둘째, 설정한 기준에 대한 현실적 관리 가능성(역량)

- 먼저 독일의 경우,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개념이 농업생산경영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농업경영체 기준은 농업생산의 매출액이 농업경영체 매출액의 1/2 이상 되는 것임.
 - 여기에 농업생산 이외의 사업도 농업생산 관련 활동으로 특정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지소유자격법인 자격기준을 ‘농업’에 관한 매출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법인의 사업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농지소유자격법인 자격기준 ‘농업’에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사업이 포함됨. 그밖에 농지소유자격법인은 농업관련 활동(농업생산, 농업관련 사업 외) 및 비농업활동을 전체 매출액의 50% 한도까지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일본의 기준은 독일과 차이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농지를 이용한 사업 매출액을 해당 농업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일본의 기준 50%보다 낮지만, 일본 농지소유자격법인의 ‘농업’의 범위보다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농지를 이용한 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므로 농업생산의 비율 측면에서 기준이 크게 낮은 것은 아님.
- 한편,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자격기준을 단순하게 설정한 이유는 농업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임. 일본처럼 ‘농업’의 범위에 농업관련 사업을 많이 포함시키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짐. 본 연구의 제안처럼 ‘농지를 이용한 사업’의 범위를 농업생산활동과 자가 생산물의 가공·판매활동으로 한정시키면 이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됨.
 - 우리나라 지자체의 농업법인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자격기준의 단순화가 실질적으로 농업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농지소유 농업법인 관리방안

-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누어볼 수 있음.
 - ① 농업법인 제도에 의한 관리
 - ② 농지제도에 의한 관리
 - ③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의한 관리

2.1. 사전적 관리

2.1.1. 농업법인 설립신고에 의한 관리

-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등기 이전에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5항).
- 지자체는 농지를 소유하려는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의 경영으로 사업을 신고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2.1.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의한 관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제도임.
-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 관할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²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농지법 제8조의3 제3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②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 ③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함)
 - ④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다년생식물의 영농계획
 - ⑤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농지

20)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①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농지소유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중 일부
-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⑥ 신청자의 영농여건
- ⑦ 신청자의 영농의지

○ 시·구·읍·면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① 농지소유 규정과 관련된 「농지법」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 등)
- ②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상의 기재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③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다만, 동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
- ④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m² 이상
 - 나. 곤충사육사 설치 농지: 165m² 이상
 - 다. 이 외의 농지의 경우: 1,000m² 이상

2.1.3.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의한 관리

-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직불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임의등록임(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지소유자 지원이 아니라 실경작자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법인 뿐 아니라 농지를 임차하는 농업법정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등록정보에 대한 심사도 농지소유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농지이용 사항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관리에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정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록제에 의한 관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5조 제3항).

○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법인(농지소유 농업법인 포함)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상기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중장기적 과제는 일정한 영농규모 이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독일의 최소영농규모 운용 사례 참조)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하여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농업법인 관리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되어 농지소유 농업법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임.

2.2. 사후적 관리

2.2.1.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의한 관리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농업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추가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성됨(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연간 매출액 중 농지를 이용한 사업 매출액이 30% 이상인지 확인하고,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²¹⁾

21)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2.2.2.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한 관리

- 사후적 농지관리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농지처분명령으로 이루어짐.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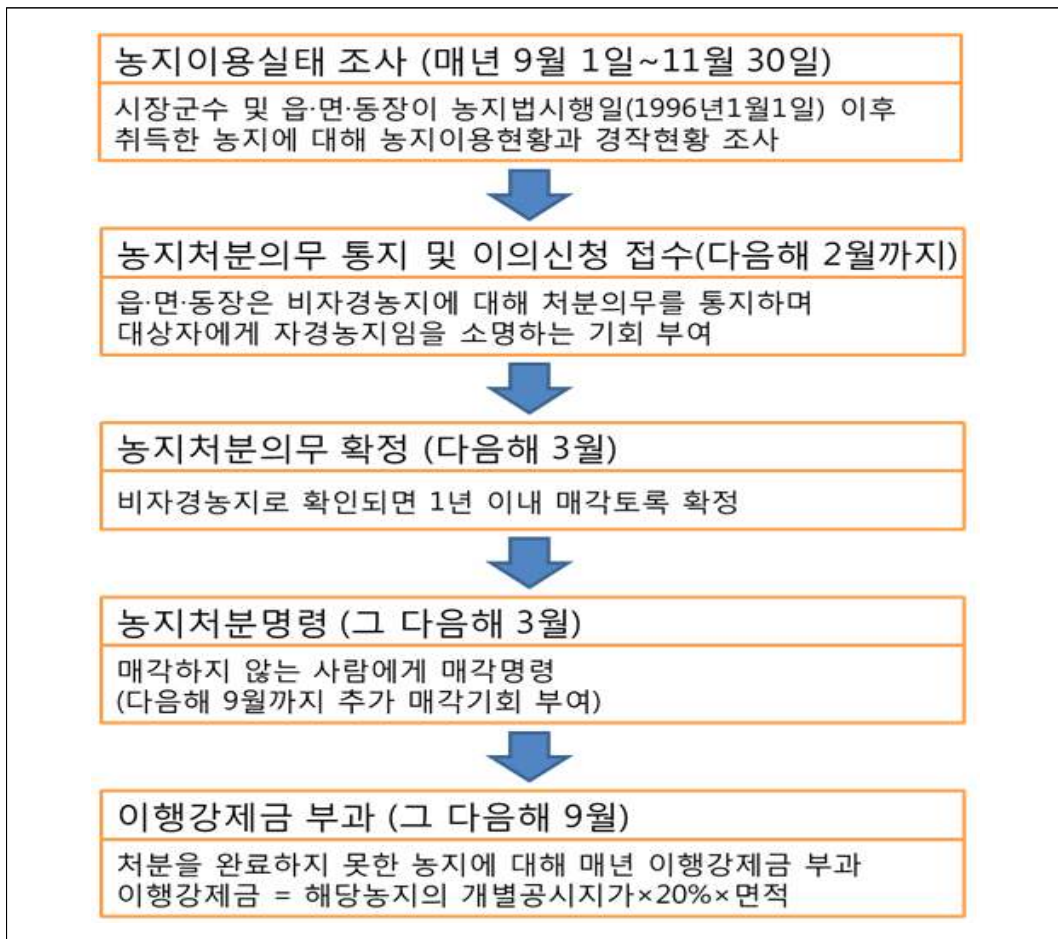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취득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임.
- 조사사항은 1) 농지이용현황 2) 경작현황이며, 이 중 농지이용현황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작물 경작: 조사대상기간 동안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시설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 ② 다년생식물 재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지
 - ③ 다음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²²⁾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④ 휴경 여부: 조사대상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 ⑤ 빈 축사: 조사 당시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
- 경작현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자경: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② 임대 또는 사용대: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
 - ③ 부분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²²⁾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에 한하고,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 시설은 2012년 7월 18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에 한함.

- ④ 전부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

<그림 3-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처분명령 추진체계



자료: 김수석 외(2020), p.25.

- 농지소유 농업법인이 농지이용현황 조사에서 휴경을 하거나 양축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대상이 됨.
 - 경작현황조사에서 농업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 전부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대상이 됨.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처분대상농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서 실시한 ① 농지이용현황 ② 경작현황 외에 ③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나. 농지처분명령제도

- 농업법인과 관련되는 처분대상농지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 ②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에 따라 취득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그 농지
 - ③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 ④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의 해당 농지
 - ⑤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²³⁾
- 농지소유 농업법인을 새롭게 제도화할 경우,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이용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업 경영체법」 제20조의2 제9항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대상이 되도록 「농지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함.
- 시·군·구청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됨.
- 농지의 처분명령은 ①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와 ②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 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임.
-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는 「농지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23) 현행법상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임.

2.2.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실태조사에 의한 관리

- 2023년에 신설된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농관원은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는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허위정보로 부당하게 정책지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함.
- 등록정보의 정확성 검증은 전산검증을 통해 정보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한 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등록정보에 대한 전산검증은 경영체등록정보와 타 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대량 검증 및 상시검증 형태로 이루어짐.
-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농관원은 불일치하는 정보 내용에 따라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을 요청하거나(농어업경영체법 제6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
 - 이는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5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개편방안

1. 농업법인 사업범위 체계 재설계

- 현행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5가지 주사업과 6가지 부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 주사업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여기서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분의 실익도 없는 상태임.

- 주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김명아 외 2020: 75).
-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규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주사업과 부대사업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계 설정 위에 주사업과 부대사업을 재배치하는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우선, 부대사업의 개념을 주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 정비가 필요함. 주사업은 부대사업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은 주사업 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함.
- 다음으로, 현재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중에서 부대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주사업 또는 주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대사업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경영(1차 산업)을 전제로 농산물 가공(2차 산업), 농촌관광(3차 산업) 등 사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산업을 의미하므로 ‘농업의 경영’의 부대사업으로 봐야 함.
- 한편,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규정이 통합되기 전(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2022.5.9.)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현행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영농조합법인만 영위 가능한 사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농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혜택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부대사업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만 세제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바목(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사업, 부대사업 중 어느 사업으로 규정할지 여부와 법인 유형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허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어업법인 사업범위의 경우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등 법인 유형에 따라 사업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범위 확대 기준 검토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 소유·이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범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지를 이용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농업, 농업인의 기준을 살펴보고, 사업범위 확대 논의 시 검토대상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함.
- 먼저,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음.
 -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있어 농작물재배업은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임업은 시행령을 참고하되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은 농축임산물 생산(1차 산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함. 축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준용하는 대신 후술하는 농업인 기준을 참고하도록 함.

- 다음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농업경영 주체로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농업경영의 범위를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범위로도 볼 수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농업인에 대한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의 범위에는 기본적인 농지 경작(제4조 제1호) 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제4조 제2호 나목, 다목)을 포함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2호 나목
<p>「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u>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4)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5) 1)에서 4)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제4조 제2호 나목을 통해 임업의 경영은 산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임업의 경영을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인정하되 임업의 경영만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허용할 수 없음.
 - 또한, 임산물의 범위를 판단할 때 위 조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2호 다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u>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u>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u>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u>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u>가축을 사육하는 사람</u>

-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
- 5) 농지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제4조 제2호 다목을 통해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세부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곤충 사육 또는 생산도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에는 축산업 세부유형의 정의가 없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축산업의 범위는 「축산법」 제2조(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축산법」 제2조(정의)에서는 위에 나열되어 있는 종축업, 부화업, 가축 사육업 외에 정액등처리업도 축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4개 세부유형 모두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농지를 이용한 사업의 범위 기준을 농업경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농지 소유·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첫째,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농업경영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둘째, 개별 농업경영체(농업인)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농업법인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셋째, 일반 법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허용해야 할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²⁴⁾ 이때, 해당 사업의 발전동향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

24) 일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보다 농업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제혜택 등 유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 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희망하는 수요가 있음. 이는 현행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내에서 일반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3. 사업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사업

3.1. 스마트농업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생산·공급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의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농업을 말함.
- 한편, 스마트농업의 발전 동향은 스마트팜에 의한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을 둘러싼 전후방산업까지로 확대되고 있음. 최근 현장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이 그동안 축적한 스마트팜 관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3.2. 사회적 농업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 사회적 농업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²⁵⁾을 통해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16일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제정(‘24.8.17. 시행)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① 농업생산활동, ② 사회적 약자 돌봄 및 고용, ③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유도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농장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임.
 -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전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 수입) 중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25) 이 사업은 2024년에 명칭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바뀜.

3.3. 농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업

- 규모화, 조직화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제3자에게 농업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개념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재배기술, 경영능력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관광 사업에서 언급되는 교육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중장기 검토과제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농업법인이 일반 법인보다 세제상 혜택 등 제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임. 여기서 발생하는 농업법인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첫째, 새로운 사업을 농업법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 근거에 따라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둘째, 농지소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개별 농업경영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지비소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세제상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감축하도록 함.
- 첫째, 농업법인의 사업이 농지이용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이 농업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즉, 일반 법인이 아니라 농업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농업법인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세제상 혜택 등 제도적 이점에 따라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범위 확대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농업생산을 주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농업법인이 될 수 없고, 일반 법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점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주는 대신, 농업법인의 사업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농업부문에 기여하는 내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명아·김은정·장원규·홍성민·윤창호. 2020.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 김미복·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김수석·국승룡·유찬희·김종인. 2017.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수석. 2007.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박석두. 2006.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김종선·변아름.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수석·조원주·추성민. 2020.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2a.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2b.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 마상진·안석·김유나. 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변재연. 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유찬희·김수석·이용건·한이철·임준혁. 2022. 『농지이용행위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농림축산 식품부.
- 임송수·임지은. 2017.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KREI 현안분석」 제2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id. 2005. Besteuerung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Bonn.
- aid. 2003. Rechtsformen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 Bonn.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EL). 2019a. Agrarpolitis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19.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EL). 2019b. Wichtige steuerliche Regelungen für die Land- und Forstwirtschaft.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EL). 2022.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2022. Frankfurt/M.
- <국내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발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농지법

민법

상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산업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직거래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일본 법령>

농지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독일 법령>

Bewertungsgesetz: 가치평가법

Einkommensteuergesetz(ESStG): 소득세법

Einkommensteuerrichtlinien(ESStR): 소득세지침

Genossenschaftsgesetz: 협동조합법

Umsatzsteuergesetz(UStG): 매출세법

부록 1

<부표 1> 농업·농촌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관련 법규

법률명	조문 내용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p> <p>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p> <p>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p> <p>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을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p>
<p>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p> <p>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p>

	<p>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이하 “양잠산물 등”이라 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p>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p>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김치산업 진흥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p>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농림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p> <p>3.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p>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p>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p> <p>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p> <p>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p>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업 시행규칙	<p>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p> <p>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p> <p>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p> <p>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p> <p>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p> <p>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p>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p>
농어촌정비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p>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p> <p>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p>

	<p>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p> <p>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p> <p>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p> <p>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p>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p>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p> <p>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p> <p>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p>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p> <p>1. 주택활용형: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재배 또는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p> <p>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p> <p>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p> <p>4. 농장형·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p> <p>5. 학교교육형: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p>
말산업 육성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p> <p>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p>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p>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p> <p>1.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p> <p>2. 말이용업</p> <p>3. 말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p> <p>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판매업</p> <p>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p> <p>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 세 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육하거나 말의 유통업을 하는 자</p> <p>2. 제1항제2호에 따른 말이용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p> <p>3. 제1항제3호에 따른 말조련업·장제업·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장제 또는 재활승마지도를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자</p> <p>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p>
말산업 육성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p> <p>4. “말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p> <p>나. 밀 제분업</p> <p>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p> <p>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p>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p>제2조(말산업의 범위)</p> <p>「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p>

	<p>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문자·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p>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인삼산업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종자산업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p>것을 말한다.</p> <p>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9. “중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중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p> <p>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p>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p>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 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p> <p>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p>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p> <p>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p> <p>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p> <p>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p> <p>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p>
축산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p> <p>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p> <p>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p>
<p>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p> <p>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p>
<p>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p> <p>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p> <p>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표 2> 농업법인 관련 중앙부처 소관 법규

법률명 (소관부처)	조문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제2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제33730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리용 건축물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①②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이 설치하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p>①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설치하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하되,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p> <p>②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p>
<p>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p>	<p>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별표]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제33621호</p> <p>나.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p> <p>2)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p> <p>가) 창고</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특별관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관리용 건축물</p> <p>(1)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나)·(라)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특별관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p>	<p>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업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p>
<p>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p>	<p>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p>	<p>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p> <p>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p>

	<p>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p>
<p>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p>	<p>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1.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p> <p>(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낙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p> <p>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p> <p>(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p> <p>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p> <p>(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자(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p> <p>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p>
<p>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p> <p>- 영농조합법인 (126조) - - 농업회사법인 (128조) -</p>	<p>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p> <p>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p>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hr/> <p>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hr/> <p>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	---

	<p>⑧ 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p> <p>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에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에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p>
<p>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p>	<p>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p> <p>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제112조의 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p>
<p>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p>	<p>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p>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p>	<p>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p>	<p>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p> <p>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p>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p>제15조의 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업인의 경우 가. 밭·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 논: 30만제곱미터 다. 초지: 30만제곱미터</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밭·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 논: 50만제곱미터 다. 초지: 50만제곱미터</p>
	<p>제17조의 2(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①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업인: 30만제곱미터 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p> <p>② 제1항에 따라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p>
	<p>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발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 중 연결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p> <p>2.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지 않은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p> <p>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p>제26조(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영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면적 및 공동경작방식 등 공동 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p>

	<p>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p> <p>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회사법인 (제10조) -</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구·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p> <p>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p>
<p>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p>	<p>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p> <p>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p> <p>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는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p> <p>제15조(매립지등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p>
<p>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p>	<p>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p>

<p>관련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p>	<p>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 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p>
<p>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 법인을 말한다.</p>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p>	<p>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 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 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p>	<p>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 흥원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p>	<p>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p>	<p>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총리령 제1879호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 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 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 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 영농조합법인 (제63조, 제68조) - - 농업회사법인 (제65조) -</p>	<p>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 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times \{6\text{억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 수} \div 12) \div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div>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p>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 수 ÷ 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⑦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text{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div \text{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text{부대사업 등 소득금액} +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div \text{총 소득금액}$$

-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frac{\text{「소득세법」 제 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text{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양도가액}} \times$$

- ⑧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에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text{양도소득금액} \times \left(\frac{\text{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에정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right)$$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p>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p> <p>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p> <p>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p> <p>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p> <p>- 영농조합법인 (제27조) - - 농업회사법인 (제26조) -</p>	<p>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p> <p>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p> <p>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p> <p>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제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p> <p>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p> <p>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정증명의 확인</p>
<p>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p> <p>- 영농조합법인 (제66조, 제71조) -</p> <p>- 농업회사법인 (제31조, 제68조) -</p>	<p>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p>

	<p>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에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에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p> <p>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p> <p>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p> <p>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p> <p>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p> <p>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p>
<p>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p> <p>- 영농조합법인 (제79조, 제81조제3항) -</p> <p>- 농업회사법인 (제81조제2항) -</p>	<p>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p>

	<p>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영농조합법인-</p>	<p>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p> <p>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p> <p>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① 시·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p> <p>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p> <p>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p> <p>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영농조합법인-</p>	<p>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p>

	<p>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병역법 (병무청) - 농업회사법인 -</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p> <p>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p> <p>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p> <p>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p> <p>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p>
<p>병역법 시행령 (병무청) - 농업회사법인 -</p>	<p>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p> <p>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p> <p>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p> <p>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p> <p>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p> <p>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p>
<p>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회사법인 -</p>	<p>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회사법인 -</p>	<p>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p> <p>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p> <p>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록 2

농지소유적격법인 보고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주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아래와 같이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아 래-

1 법인의 개요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 사무소의 소재지		
경영면적(ha)	소유농지 유무	유·무
	논	
	밭	
	채초방목지	
법인형태		

2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1호 관계

1) 사업 종류

구분	농업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내용
	생산 농축산물	관련사업 등 내용	
실적			
다음 사업년도 계획			

2) 매출액

연도	농업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내용
보고대상년도 2년전(실적)		
보고대상년도 1년전(실적)		
보고대상년도(실적)		
다음 사업년도 계획		

3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2호 관계

<구성원 전체 상황>

1) 농업관계자(권리제공자, 상시종사자, 농작업위탁자, 농지중간관리기구,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투자원활화사업에 근거한 승인회사 등)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국적	재류자 격 또는 특별영 주자	의결권 수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				농작업 위탁 내용
					농지 등 제공면적(m ²)		농업 연간종사일수		
					권리 종류	면적	최근 실적	예상 일수	

주1) 구성원이란, 주식회사(특례유한회사를 포함)는 주주, 합병·합자·합동회사는 사원, 농사조합법인은 조합원

주2) “재류자격 또는 특별영주자”란은 일본국적 이외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재류자격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류자격을 기재

주3) 농업이란 농업관련사업을 포함하며, 농작업이란 경작이나 양축 등에 직접 필요한 작업을 말함

의결권 수 합계

농업관계자의 의결권 비율

해당 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필요한 연간총근로일수

2) 농업관계자 이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 사무소 주소지	국적 등	재류자격 또는 특별영주자	의결권 수

주) 국적 등은 법인인 경우, 그 설립에 있어 준거한 법령을 제정한 국가(내국법인은 일본)를 기재

의결권 수 합계

농업관계자 이외의 의결권 비율

(유의사항) 구성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조합원 명부 또는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 또한 농림어업법인 등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도(평성14년도) 법률 제52호)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승인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승인회사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구성원의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

4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관계

1) 이사, 중역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모두의 농업종사상황

성명	주소	국적 등	재류 자격 또는 특별 영주자	직책	농업연간종사일수		필요 농작업 연간종사일수	
					최근 실적	다음 사업 년도 계획	최근 실적	다음 사업 년도 계획

주1) 농업이란 농업관련사업을 포함함.

주2) 농작업이란 경작이나 양축 등에 직접 필요한 작업을 말함

2) 중요한 사용인의 농업종사상황

성명	주소	국적 등	재류 자격 또는 특별 영주자	직책	농업연간종사일수		필요 농작업 연간종사일수	
					최근 실적	다음 사업 년도 계획	최근 실적	다음 사업 년도 계획

주) 중요한 사용인이란 해당법인의 농업에 대해서 권한 및 책임을 갖는자를 말함
<기재요령>

1. 농업에는 다음의 “관련사업 등”을 포함하고 농작업 외, 노무관리 또는 시장개척 등을 포함되어 있음.
 - 1) 그 법인이 실시하는 농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업
 - 가.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사용하는 제조 또는 가공
 - 나. 농축산물의 저장, 운반 또는 판매
 - 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제조
 - 라. 농작업의 수탁
 - 마.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자의 숙박 등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 필요한 역무(노무 또는 서비스)의 제공
 - 2) 농업과 병행하는 임업
 - 3) 농사조합법인이 시행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2. “2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1호 관계”의 “1)사업 종류”, “생산농축산물”에는 법인이 생산하는 농축산물 가운데, 조수익의 50%를 초과한다고 여겨지는 품목을 기재함. 또한, 그 어떠한 농축산물의 조수익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조수익이 많은 순서대로 3가지 농축산물의 명칭을 기재
3. “2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1호 관계”의 “2) 매출액”, “농업”에는 법인이 실시하는 경작 또는 양축 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의 매출액 합계를 기재하고 그 외의 사업 매출액에 대해서는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기재
4. “3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2호 관계”의 “1)농업관계자”에는 농림어업법인 등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승인회사가 법인의 구성원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승인회사의 주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주별 의결권 수를 기재함. 여기에 복수의 승인회사가 구성원인 법인에 있어서는 승인회사별로 구분하여 주주의 상황을 기재
5.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해서 법인에 농지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가 법인의 구성원인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2호 관계”의 “1)농업관계자”에서 “농지 등의 제공면적(㎡)”의 “면적”에는, 그 구성원이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가 해당법인에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는 농지 등의 면적을 기재

6. “2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1호 관계”, “3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2호 관계”, “4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관계”의 다음 사업년도계획에는 보고 사업년도의 다음 연도 계획을 기재

7. “2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1호 관계”의 다음사업년도 계획, “3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2호 관계”의 주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국적 등 및 다음 사업년도의 계획 및 “4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관계”의 국적 등 및 다음사업년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농지소유적격법인만 기재함.

단, “3 농지법 제2조 제3항 제2호 관계”의 주소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및 국적 등에 대해서는 총주주 의결권의 5/100 이상을 갖는 주주 또는 출자 총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출자자에 한함.